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케이에프지(주) 보험대리점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6. (검사서 통보일)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태료(70만원)
보험설계사	과태료(80만원)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(자필서명 미이행)

- 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- 케이에프지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20.8.10.~2022.8.10. 기간 중 ○○○보험(주) ‘◇◇보험’ 등 총 3건의 손해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.2백만원, 모집수수료 0.1백만원)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7호